

수출신용보증(공급망) 인수규정

제 정 : 2018. 6.12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출신용보증(공급망) 종목의 인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원칙) 인수업무는 무역보험 관계법규(업무방법서를 포함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되 무역보험 관계법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적용대상거래) 이 규정의 적용대상거래는 수출신용보증(공급망) 약관(이하 “보증 약관”이라 함) 제2조에 규정된 거래로 한다.

제 4 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“회사채등급(Issuer Rating 포함, 이하 같음)”이라 함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신용평가업 허가를 취득한 신용평가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2개월 이내에(예비평가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) 평가한 회사채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말한다.

1.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
2.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
3. NICE신용평가주식회사

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증 약관의 정의를 따른다.

제 5 조(보증대상 구매기업) 이 규정의 보증대상 구매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에 한한다.

1. 신용등급 : 공사 신용등급 C급 이상, 회사채등급 BBB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기업규모 : 최신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1,000억원 이상
3. 업 종 : 조선업, 건설업, 해운업을 제외한 전 업종

제 6 조(보증 방법)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수출신용보증(공급망) 보증서 유효기간 이내에 실행한 신용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한도 이내에서 회전하여 보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(신용보증한도의 책정 및 보증약정의 체결) 구매기업이 수출신용보증(공급망)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신용보증한도를 책정하고 구매기업과 수출신용보증(공급망) 약정을 체결한다.

제 8 조 (보증기간) 본 종목의 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제 9 조(보증관계의 성립) 이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보증약관 제5조에 부합하게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.

제 10 조(신용보증한도 책정 금지)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한도의 책정을 금지한다.

1.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2. 수출자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전국은행연합회의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·대위변제·대지급·부도·금융질서문란정보(관련인 정보 제외), 과태료 체납정보,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보유한 경우
3. 수출자가 허위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
4. 수출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중인 경우
5. 수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. 단, 징수유예액은 체납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6. 수출자가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
제 11 조(신용보증 이용 제한)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.

제 12 조(부분보증) ① 위험관리 및 효율적인 신용보증한도의 관리를 위해 부분보증을 실시하며 보증비율은 90% 이내로 한다.

② 보증비율은 구매기업의 신용도, 금융기관의 성격, 이용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.

제 13 조(최대보증한도) ① 구매기업별 책정가능한 최대보증한도는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본 종목의 연간 총 보증한도는 5,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,000억원까지 추가 책정할 수 있다.

제 14 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“수출신용보증(공급망) 인수요령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 (제 정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